

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

우 135-757 강남구 삼성동 159-1 무역회관 1801 / Tel 6000-1840 / Fax 6000-1850, 1856
 수입업무부 이사:조종화 부장:안상필 담당:최은정 E-mail : watw@kpta.or.kr

문서번호 약수협 2- 885

시행일자 2013.7.29
 수신 회원사 및 비회원사
 대표 귀하



참조

제목 화장품 허위·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주요 위반 사례 알림

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267(2013.7.26) 관련입니다.

2. 위호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사전 예방적 화장품 안전 관리를 위해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2013년 정기점검 결과 「화장품법」 제 13조(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 등의 금지)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, 위반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 위반 사례를 송부하여 온 바, 회원사 및 비회원사께서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위반 유형	주요 위반 사례	행정 처분 기준
의약품 오인 표시·광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부재생, 세포재생 등 표현 ○ 질병의 진단·치료·경감·처치·예방 표현 (아토피, 여드름, 항균·항염 등) 	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(광고)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(표시)
기능성화장품 오인 표시·광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된 제품 이나 미백 효과가 있다는 표현 ○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주름개선, 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 	

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·광고	○ 일반화장품의 '식약청 인증 제품' 표현	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(광고)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(표시)
기타	○ 전문가 집단 또는 전문기관이 이를 지정· 공인·추천·지도·연구·개발하고 있다는 표현	

※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정보자료>법령자료>지침·가이드라인·해설서>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」 참조. 끝.

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이

